

#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간문화적 성찰 다문화시대에 따른 정치철학적 독해<sup>1)</sup>



최치원 (고려대학교)  
<cwchoi@korea.ac.kr>



## I. 문제제기

1987년에서 정점을 이룬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화 운동의 현실은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1987년 10월 29일, 시행은 1988년 2월 25일)으로 일단 결실을 맺게 되었다. 87년 개정헌법이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화운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각 분야에서 헌법 전반에 관해 학문적 탐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87년 체제'라고 불리어지는 학술용어의 핵심에 1987년에 개정되어 오

1)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구되었음(NRF-2011-330-B00204).

늘에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이 있다. 헌법에 대한 학문적 탐구의 대상은 87년 헌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제헌 헌법과 더 거슬러 올라가 대한 제국기의 만민공동회(1898)의 활동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 주제도 헌법의 역사적 기원, 정치권력의 구조와 이념, 경제이념, 건국이념, 역사적 정통성, 민주주의의 제도적 내용과 구성요소, 국가 정체성 문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오늘날 헌법(constitution)으로 번역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의 어원은 전체 시민의 공동체, 시민적(정치적) 삶의 국가질서, 통치 내지는 지배 행사의 형태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politeia'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politeia'의 의미를 당대의 맥락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헌법은 한 국가내의 "여러 직권들(authorities)의 조직이자 특히 모든 직권들 중 최고(sovvereign) 직권"의 조직이고, 최고 직권은 "정부(citizenbody)"이며 "헌법은 사실상 정부(the sum total of politeuma)"라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적 헌법들에서는 시민 혹은 다수(people or demos)가 최고(supreme)이고, 과두정에서는 소수"가 최고가 된다. (Aristotle 1972[1962], Book III, 6, 113) 이것은 국가질서의 상태에 대한 중립적 서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곳에서, "헌법은 국가가 관직(offices of power)의 배분과 최고권(sovvereignty)의 규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전체(social complex)가 각각의 경우에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규정을 위해서 채택한 배열"(Aristotle 1972[1962], Book IV, 1, 151)이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대한 가치 규범적 서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담겨 있는 헌법 개념은 수천 년 전에 노예제 사회를 토대로 했던 그리고 여성들을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시켰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헌법을 이해하는 데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그것은 국가의 통치 내지는 지배 행사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측면에서도 헌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지침이 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서술의 맥락(특히 후자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 이미 30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오늘날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속에서 87년에는 상상 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양식은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사회'로 개념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꼭 '다문화사회'에서만 관찰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 지구화의 영향하에 있는 지역 어디서든지 관찰가능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은 '관직의 조직' 내지는 '최고 직권'으로서 정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포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삶의 양식은 '사회전체가 각각의 경우에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규정'이라는 규범적인 의미에서 성찰될 필요가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물음이 중요해 진다: '다문화사회' 속의 대한민국 헌법은 이 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한국이 호주나 미국 혹은 캐나다와 같이 (이주민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만든) 다문화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은 기대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적어도 (이주민이 사회 내에서 소수로 존재하고 있는) 독일이나 영국 혹은 프랑스와 유사한 형태의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지가 가능하다. 여러 법학자들 사이에서 다문화주의를 ‘문화국가원리’ 속으로 해소시키려는 입장(김선택 2010 18-23; 성선제 2012, 125-130)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의 중간” 혹은 “동화금지와 다문화주의’ 사이의 어느 지점”을 다문화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김선택 2010, 11, 34)는 주장과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헌법교육’의 맥락에서 ‘헌법애국주의’를 다문화사회의 대응책으로 제시(오승호 2011, 77-111)하는 입장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헌법적 배려의 출발점”을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에 찾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전광석 2010, 141) 등도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변화된 시대정신”에 상응하여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철폐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법” 등을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성선제 2012, 140-141)는 주장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언급될 것은, 탈북민 문제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인 ‘다문화사회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이덕연 2013 57-58)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이 다문화사회냐 그렇다면 얼마만큼 다문화사회냐 혹은 다른 다문화사회와 어떤 공통의 그리고 차별적 측면을 갖느냐 그리고 이것의 해결책이 무엇이나라는 물은 혹은 “다문화라는 용어가 정부의 정책집행의 수단으로 채택되어 관주도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최경옥 2010, 8)는 등의 물음과는 별개로 다문화라는 개념이 학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이해되고 있다는 현실 자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고, 그동안 당연시되어온 것들이 문제시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 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간문화적 입장에서 성찰해 본다. 성찰의 중심은 헌법 전문이다. 헌법에 대한 성찰의 목적은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떤 (정책적,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시각과 사유의 폭과 깊이를 키우는 데 있다. 즉 본 연구는 앞서 제기된 질문인 ‘다문화사회’ 속의 대한민국 헌법은 이 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과 대한민국 헌법이 양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고자 한다. 중요한 점은 문화의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정책적 법률적 대안을 서둘러 제시하려는 자세는 바로 문화들 사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간문화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특정의 문화적 실체에 입각해 다른 특정의 문화를 인식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자세는 문화들이 처음부터 서로 고립되어 존재한다는 입장과 관계한다), 이러한 실체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문화와 문화들 사이에서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는 그 자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과정적이고 구성적인 존재로서 현상하며, 현상된 문화들 ‘사이(inter-, 혹은 in-between)’로 일컬어 질 수 있는 관계의 망을 형성”한다. 바로 이 “사이”의 영역이 문화들의 ‘소통’의 영역이 된다.(최치원 2013, 375) 부연하자면 간문화적 입장은 다문화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을 갖지만, 하나의 특정 문화에서 다른 특정 문화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sup>2)</sup>

이 맥락에서 본 연구가 중심주제로 삼고 있는 앞서의 질문(다문화사회 속의 대한민국 헌법이 이 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을 다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사회’ 속의 대한민국 헌법은 ‘사이’라는 의미에서 ‘문화들의 소통의 영역’이 현상하고 있는가?

헌법은 규범적 의미에서 한 국가의 지도 이념이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이며, 서술적 의미에서는 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치적 질서와 기능 및 역할을 구분해 놓는 분류양식이자 국민 전체를 법과 권리의 이름으로 묶어 놓는 틀이지만, 학문적 연구자에게 그것은 시대에 상응하여 단지 하나의 독해 내지는 해석을 요구로 하는 사상적 그리고 철학적 텍스트일뿐이다. 학자적 시각에서 볼 때 헌법에 내재한 각종의 이념이나 분류양식 혹은 틀이나 지침 등이 시대와 맞지 않으면 앓을수록 그것은 보다 냉철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위있는 법률적 해석이나 법학자들의 학설과도 관계가 없다.

## II. 헌법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 주어 혹은 주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sup>3)</sup>

2) 이것은 초문화적 입장인데, 간문화적 입장은 다문화와 초문화적 입장의 중간형태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최치원(2013, 특히 376-387) 참조.

3) 이하 대한민국 헌법의 원문은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AJAX>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용함.

대한민국 헌법은 위의 전문에서 보듯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어 혹은 주체로 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라는 술어로서 끝을 맺고 있다. 하나의 집합적인 정치적 의지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개입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을 가진 유일한 행위자가 된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상응하여 헌법 개정의 주체로서 그러므로 헌법 제정과 수호의 주체로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군주국이나 이와 유사한 국가체제에서는 전체로서 국민의 집합적 의지는 인정되지 않고 군주 혹은 소수의 지배자들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므로, ‘우리 대한민국’을 헌법 개정과 제정 그리고 수호의 주체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규범적으로 정당하다.

헌법을 통해 전체 국민(우리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적 질서가 매개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내재한 규범적 정당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1조 1항과 2항은 각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정권력의 규정과는 별개로 문제는 현실적으로 과연 누가 ‘우리 대한민국’인가라는 점이다. 예컨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다라는 정당성의 문제는 인간이 과연 나면서부터 실제로 자유로운가라는 현실적 문제와 항상 상충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 국민이라는 정당성의 문제는 실제로 누가 ‘우리 대한민국’인지라는 현실적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헌법은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해결을 내 놓고 있다. 즉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장 제2조 1항)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데, ‘법률’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법률’에 묶여진 단수의 인간 존재가 대한민국의 전체 실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적 개념을 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는 지나치게 근대적인 일국중심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법률’에 묶여진 단수의 인간 존재가 대한민국의 전체 실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제헌헌법) 혹은 ‘건국헌법’으로 불리어 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1호(1948)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다. 제헌헌법은 헌법의 이야기의 주어를 ‘우리들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우리들 대한민국’이란 “일제의 <조선호적령>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법상 ‘북위 38도선이남 한반도 지역에 본적지를 둔 조선호적을 가진 자’”(김성호 · 최명호 2008, 100-101)<sup>4)</sup>이다.

4) 실정법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규정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그리고 잠재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 대한국민과 한국인 내지는 전체 한국민족 사이의 범주적 일치와 균열에 관한 고민은 1948년의 시원적 상황에서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나 이주노동자의 참정권, 또 재외교포의 이중국적 등 당면해 있는 법적책상 현안도 헌법전문에 규정된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법적·정치적 의미부여를 비껴가기 어렵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헌법규범화 되어있는 통일의 당위성 역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변함없는 헌법전문 의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체성과 결부시켜 해석해야 할지도 모른다. 통일의 헌법규범적 당위성을 인정하고 보더라도, 평화적 통일방안으로 논의되는 1민족2국가2체제론이나 1민족1국가2체제론 역시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체성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성호 · 최명호 2008, 108).

이러한 실정법상의 대답이외에도 누가 ‘우리 대한민국’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도 대답이 주어지고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 특유의 정체성 확보에 관한 논제들 즉 국시, 국어, 국가, 국기, 수도”를 헌법에 확실히 하여 “다문화사회의 급속한 전개에 부응하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성낙인 2011, 101)하는 연구나 혹은 한국의 정당들에 표방된 ‘역사의식’이나 ‘이념’을 확고히 해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양승태 2011, 5-27)하는 연구가 그것이다.

그런데 누가 ‘우리 대한민국’인가의 문제는 이상에서와 같은 실정법적 이해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요청 이상의 성찰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인간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인간으로 묶어서 이야기함으로써 인간 속에서 다양성의 의미를 제거시키고 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과 ‘그들’ 혹은 ‘너희들’ (대한민국이 아닌 것들) 사이에서 양자를 바라다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차별적인 단수의 정체성 개념임이 드러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라다 본 ‘그들’ 혹은 ‘너희들’이 이야기에 끼일 자리는 없다. 이 문제는 미국 헌법(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의 전문을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up>5)</sup>

미국의 헌법 역시 ‘우리 미국 국민(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이라는 주어를 설정하여 헌법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겉보기에 ‘우리 미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의 주어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가 여러 이주민과 원주민이 섞여진 다인종·다민족의 조건 속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 고려된다면, 이 공통점은 차이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미국 국민’이라는 주어는 한국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단수의 정체성이 아니라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복수의 정체성이 내재해 있는 개념인 것이다. ‘우리 미국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과는 달리 ‘너희들’ 혹은 ‘그들’이라는 타자를 포섭할 수 있는 공간을 자신 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다층적 정체성의 주어인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본다면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5)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http://constitutionus.com/>

수권 근거를 헌법 전문에서 찾을 수 있는지는 의문”(최윤철 2012, 17)이라는 주장 혹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족’ 개념을 “대체하고 국민을 보완할 개념으로서 시민” 개념(즉 “외국인, 여성, 소수, 인종, 언론, 성적 소수자, 인권, 노인, 교육 등 각종 사회문제와 연관된 시민사회단체들”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와 모든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시민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이한태 2013, 437)는 주장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법학적인 해석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강조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 즉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적인 단수의 정체성 개념이라는 점이 바로 이 주어를 꾸미는 형용구,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을 들여다보면 구체화 된다는 점이다. 사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이라는 형용구는 너무 독특하다. 그것은 한편에서 너무 추상적이며, 다른 한편에서 너무 자기 역사중심적이다.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이라는 것은 문화들 사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들’ 혹은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혹은 그것은 형용구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너희들’ 혹은 ‘그들’을 암암리에 역사와 전통이라는 이름의 위계질서 속으로 편입 내지는 동화시키고자 의도를 숨기고 있다. ‘빛나는’ 전통의 ‘빛’은 겉보기에는 ‘너희들’ 혹은 ‘그들’을 비추어 주는 일종의 영적인 기운같은 뉘앙스도 풍기지만, ‘빛나야 할 것은 전통’이라기보다는 자유나 정의 같은 보편적 가치이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의 영문번역본을 살펴보자.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f 1960 against injustice,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and having determined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and

To destroy all social vices and injustice, and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and To help each discharge tho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oncomitant to freedoms and rights, and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reby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Do hereby amend, through national referendum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rdained and established on the Twelfth Day of July anno Domini  
Nineteen hundred and forty-eight, and amended eight times subsequently.”<sup>6)</sup>

이상에서 보듯 문제의 주어와 형용구의 영어 번역은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이다. ‘유구한’의 영어 번역이 ‘dating from time immemorial’인데, 사전적 의미로 풀어쓰면, ‘extending back beyond memory, record, or knowledge’, 즉 ‘기억이나 기록 혹은 앎을 넘어서 돌아가 있는’이다.

도대체 기억이나 기록과는 무관한 혹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이 네안테르탈인이나 호모사피엔스가 살던 선사시대부터 이미 존재하여 ‘빛’을 발하였다는 것인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없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지 않은 나라도 없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 자부하지 않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이라는 형용구에는 과거에 대한민국이 주변국에 당했던 치욕에 대한 콤플렉스를 감추고, 역사적으로 받아온 고통을 정신적으로 보상받고, 난관을 헤쳐 왔다는 자부심을 천하에 과시하는 효과를 불러내고 있다. 이 자부심은 민족의식 혹은 민족정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소 국민과 민족에 충실한 우리의 현행 헌법적 사고”(서보건 2013, 294)의 껍데기를 뚫고 심층부에 이르면, 과거 조선 500년의 정신사를 끈끈하게 엮어 온 문화적 우월주의로서 일종의 소중화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단일의 혈통적 순수성을 상기시키는) 단수의 정체성에 (역사적 단일민족을 상기시키는) 단수의 민족정체성이 서로 툇니처럼 딱 물리어져 있고, 거기다 전통과 역사로 촘촘하게 짜여진 필연성의 그물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들’ 혹은 ‘너희들’이 들어설 공간은 없는 듯하다.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문화민족(Kulturnation)’<sup>7)</sup>을 자부했던 독일연방공화국 헌법(das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전문을 보자.

“Im Bewußtsein seiner Verantwortung vor Gott und den Menschen, von dem Willen beseelt, als gleichberechtigtes Glied in einem vereinten Europa dem Frieden der Welt zu dienen, hat sich das Deutsche Volk kraft seiner verfassungsgebenden Gewalt dieses Grundgesetz gegeben.

Die Deutschen in den Ländern Baden-Württemberg, Bayern, Berlin, Brandenburg, Bremen, Hamburg, Hessen, Mecklenburg-Vorpommern,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Sachsen, Sachsen-Anhalt, Schleswig-Holstein und Thüringen haben in freier Selbstbestimmung die Einheit und Freiheit

6)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ri.ccourt.go.kr/eng/ccourt/news/related.html>.

7) 이에 관해서는 Choi(2002, 111-116) 참조.

Deutschlands vollendet. Damit gilt dieses Grundgesetz für das gesamte Deutsche Volk.”<sup>8)</sup>

독일연방공화국 헌법도 ‘독일 국민(das Deutsche Volk)’을 주어로 헌법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전문 어디에도 독일 국민의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무시키는 형용구가 없다. 전문은 ‘독일 국민’이 ‘인간과 신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있으며, ‘통합된 유럽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봉사하려는 의지에 의해 고무되어(beseelt) 있다는 것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다음은 파시스트와의 투쟁을 통해 성립된 사회주의 구동독(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헌법 (die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전문이다.

“Von dem Willen erfüllt, die Freiheit und die Rechte des Menschen zu verbürgen, das Gemeinschafts- und Wirtschaftsleben in sozialer Gerechtigkeit zu gestalten, dem gesellschaftlichen Fortschritt zu dienen, die Freundschaft mit anderen Völkern zu fördern und den Frieden zu sichern, hat sich das deutsche Volk diese Verfassung gegeben.”<sup>9)</sup>

구동독의 헌법도 역시 ‘독일 국민(das deutsche Volk)’을 주어로 헌법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전문 어디에도 파시스트와의 영웅적 투쟁의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하거나 민족적 혹은 역사적 자긍심을 주입시키려는 형용구가 없다. 전문은 ‘독일 국민’을 ‘인간의 자유와 권리들’, ‘사회정의’, ‘사회진보’, ‘타국민들과의 우정과 평화’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들과 연결시키고 있다. 요컨대 현재의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이든, 아니면 통일 이전의 구동독이든 민족이나 계급을 상기시키면서 국가적 배타성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없다. 이점 “한국인이 어떠한 형태의 노예상태도 죽음으로써 저항하겠다는 결의에 찬 행위”를 보여준 3.1운동<sup>10)</sup>이 헌법의 전체를 규정하는 이념적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두드러진다.

헌법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주어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독점될 수는 없다. 이 주어는 구체적 인간의 삶의 현실을 반영해 가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고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헌법의 이야기를 독점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민족이나 국가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다. 이야기의 독점자는 역사와 전통의 이름으로 ‘우리 역사가 아닌 것과 전통이 아닌 것(다시 말해 그들의 것 혹은 너희들의 것)’을 구별하고 차별하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와 전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된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유동적이고, 가변

8) Das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fgaben/rechtsgrundlagen/grundgesetz/index.html>

9) Die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ttp://www.documentarchiv.de/ddr/verfddr1949.html>

10) 서희경,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1898-1919),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140-163, 154

적이며 혼성화되는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출발점부터 봉쇄하고 있다. 그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빼앗아 버리고 있다.

## 2. 주어 혹은 주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계보 문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관계하는 범주들과 가치들에 관해 열거해 보자. 전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다음과 같은 범주들과 가치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범주들과 가치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누구나라는 정체성의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이다.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 이러한 법통과 이념의 ‘계승’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 이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함’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 ‘자율과 조화’
-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함’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함’
-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함’
- ‘자유와 권리’
-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함’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함’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이상에서 보듯 ‘우리 대한민국’은 각종의 범주들과 가치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정체성 개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범주들과 가치들은 앞서 소개한 미국과 독일의 헌법 전문과 비교했을 때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많고 난잡하며,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도 너무 길다. 어쨌거나 이 범주들과 가치들은 하나의 위계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분석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수준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 가. 「계보 1」 '3·1운동'을 출발로 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연관되는 범주들과 가치들: '평화적 통일의 사명',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 나. 「계보 2」 '4·19민주이념'과 연관되는 범주들과 가치들: '조국의 민주개혁',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
- 다. 「기타」 계보 1에도 2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범주들과 가치들: '자율과 조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우리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정체성의 출발점은 ‘3·1운동’을 기점으로 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이라는 비교적 근래의 사건들로 삼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라면 더 근원으로 올라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주장해야 그 의미가 합당할 것이다.

‘계보 1’이 말해 주듯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핵심은 과거(일제의 식민지배와 이에 대한 민족적 저항)에 대한 기억에 있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범주들과 가치들이 민족의 독립과 단결 및 안전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는 평화의 가치 실현을 통해 자손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미 ‘3·1 독립선언서’(1919.3.1.)는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편에서는 “민족적 독립”, “민족 자존의 정권(正權)”, “민족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발전” 그리고 “민족적 존영(尊榮)”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에서는 “전인류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 “인류평등의 대의” 그리고 “세계문화의 대조류에 기여보비(寄與補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자손손의 영구완전(永久完全)한 경사스러운 복(慶福)을 인도하여 맞이할 것(導迎)”을 주장하고 있다.<sup>11)</sup>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 4. 11) 역시 “동양의 독일인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일본의 야만” 그리고 “일본의 폭력”을 고발하고, “국제도덕의 명(命)하는 바를 준수(遵守)”하여 “우리(我)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고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영(福樂)”을 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12)</sup>

‘계보 2’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간 존엄에 대한 염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염원은 4·19 혁명 당시에 유포된 수 많은 성명서, 선언문, 결의문, 구호, 호소문 등<sup>13)</sup>에 나타나 있다. ‘기타’는 ‘계보 1’에도 ‘계보 2’에도 끼일 수 없는 어중간한 범주들과 가치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은 ‘계보 2’를 특징짓는 민주 혹은 인간 존엄 개념에 속할 수도 있을 것이고, ‘능력을 최

11) 3·1 독립선언서 <http://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3-1-31dogribusununsu.htm>

12)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http://www.ccourt.go.kr/home/main/download/opencase/document/03\\_edit.jsp](http://www.ccourt.go.kr/home/main/download/opencase/document/03_edit.jsp)

13) 4.19 공식문, [http://www.419revolution.org/morgue/morgue\\_02.asp](http://www.419revolution.org/morgue/morgue_02.asp)

고도로 발휘'는 자유 개념에 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4·19 혁명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이라든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와 같은 가치를 실현시키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율과 조화' 그리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역시 이 경우 마찬가지이다.

인상학적으로 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보 1'과 '계보 2'의 범주들과 가치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얼굴의 전체 윤곽과 눈, 코, 입 그리고 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미 '계보 1'과 '계보 2'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누구인지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얼굴(정체성)은 시대와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해야 한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다문화 사회'나 '다문화주의'라는 범주나 가치가 들어설 여지가 아주 적다는 점이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치들과 범주들을 헌법에 열거해 놓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앞서의 미국과 독일의 헌법과 비교했을 때 그 전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장황하게 열거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헌법의 핵심을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헌법이 가져야 할 진중한 의미가 사라지고 경박스럽게 보이게 까지 한다. 헌법 전문의 많은 가치들과 범주들이 단지 치장효과만을 불러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게 한다. 특히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묻게 하면서 민족 관념을 불러내고 분열(분단)되지 않았던 과거의 건강한 원시적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주는 방식이 오늘날과 같은 문화 다양성의 시대에 상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기 위해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9조)는 조항을 달아 놓고 있다. 더구나 헌법은 대통령을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세워 놓고 있는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69조)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차별하던 독일 국민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 적이 있다: "독일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독일인들에게서 결코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인을 특징짓고 있다."(Nietzsche 1968[1886], 192) 니체가 미래적 시각에서 문제삼았던 것은 끊임없이 민족이나 국가의 고유의 정체성을 불러내면서 과거를 이상화하려했던 독일인의 삶의 방식과 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려 했던 지식인들의 독일중심적 사유세계였다. 니체의 이러한 비판은 독일이 나중에 치루어야 했던 커다란 댓가(즉 주변국에 대한 침략전쟁들을 통해 오히려 자기과멸을 맞이했다는 사실)를 고려한다면 적절한 문제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미래 철학'은 단 하나의 국가적 그리

고 민족적 삶 이전에 고려해야 하는 인간의 삶의 다양성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과거의 아픈 희생의 기억으로부터 평화주의적 이념을 명시해 놓고 있고, 또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5조 1항)'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극단의 길을 택했던 과거 독일의 경험과는 비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튼 문제의 핵심은 다문화시대 속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느냐이다.

이 문제는 '계보 2'의 문제를 고려할 때도 적용이 된다. '계보 2'의 범주들과 가치들, 즉 '조국의 민주개혁',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 중에서 어느 것도 다문화 시대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설혹 '자유와 권리'가 다문화시대에 상응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하나의 특정의 문화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문화들 사이의 시각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권리'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이념에 기반을 두기 보다는, '4·19민주이념'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더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제는 '4·19민주이념'이라는 특수성에서 출발하는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다문화사회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포용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이 경우 '자유와 권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권리'가 될 뿐이다. 뒤집어 말한다면, '그들' 혹은 '너희들이 (동화 내지는 흡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치가 되었을 때 이들은 '자유와 권리'가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범통' 및 '4·19민주이념' 그리고 이에 따르는 여러 범주들과 가치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본다면 당연한 것이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들이지만, 문화들 사이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 혹은 '너희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들이다. 이 맥락에서 다문화 시대와 양립하기에 문제가 있는 범주들 내지는 가치들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 '자유와 권리'라는 훨씬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총괄개념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태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편협한 가치의 틀에 가두어 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과연 다문화시대의 문화적 다양성과 얼마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가? 문화적 다양성을 견지하는 입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소위 말해서 위배되면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가? 다시 말해 문화적 다양성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선행하기에 전자는 후자의 틀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오히려 다양

한 문화적 창발성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가?

- ‘자유와 권리’에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라는 범주를 부가하고 있는 데, 이것보다는 ‘다문화적 표현’과 같은 범주가 보다 시대에 상응하지 않는가?
-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부여되어 있는 데, 이 경우 ‘통일’의 이름으로 가치 가독점되고 다양한 문화적 목소리가 억압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은 없는가?
- ‘조국의 민주개혁’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맞물려져 다양한 문화적 실존을 개혁과 폐습의 대상으로 물고갈 위험은 없는가?
- 다문화시대에 ‘자율과 조화’ 그리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다문화시대에 상응하여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출발로 제시되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및 ‘4·19민주이념’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즉 이러한 특수성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고유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전문에 유지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인간보편적인 다문화적 시대에 어떻게 상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 Ⅲ. 맺는 말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사회’는 마지막 헌법 개정 당시에는 일반인들에서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조차 거의 인지되지 않았던 개념이었다. 민족독립이라는 역사적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3·1운동이,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이 표출되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틀이 형성되고 유지되었다면,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사회’는 그러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과는 달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헌법 속에 각인시키기에는 너무나 미미해 보이는 듯하다. 이것은 ‘다문화’와 접맥되어 있는 현재의 삶의 양식이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조용히 사회와 역사의 저변을 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시적으로는 식생활과 의복생활의 유형에서부터 거시적으로는 국민과 국가 혹은 민족의 의미가 보이지 않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헌법에 규정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들’ 혹은 ‘너희들’의 사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간문화적 문제의식에 입각에 헌법 전문에 구현된 범주들과 가치들에 관해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를 했다. ‘문화들 사이’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의 장점

은 다음과 같은 데서 나타나고 있는 데, 예컨대 하나의 문화(문화A)에게 문제로 비추어질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문화(문화B)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립된 것으로서 '문화A'를 상정하고 이 전체로부터 출발하여 '문화B'(이 경우 문화B 역시 고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를 바라보는 것의 표현일 뿐인데, 만약 두 문화들 사이(문화C)에서 '문화A'와 '문화B'를 본다면 '문화B'는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문화들 사이에서 두 문화를 생동감있고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도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하나의 문화(예컨대 대한민국의 문화)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하나의 문화(예컨대 베트남 혹은 파키스탄의 문화)를 이해한다든지 혹은 이 다른 하나의 문화의 문제가 무엇인지 등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두 개의 문화들 사이에 서서 문화들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화의 속성의 문제나 베트남의 문화의 속성의 문제는 다문화주의에서 상정되는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커다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간문화적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다문화사회'라는 것은 자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 및 시민의 기본적 권리 문제를 유발시키는) 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층적 개념이므로 문화에 대한 보다 섬세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주장하고자 한 것은 ('전통문화' 혹은 '민족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들 사이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동안 당연시되어 온 것들이 문제시될 수 있으며 다문화시대에 상응하여 문화에 대해 새로운 의미 부여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고유 정체성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사이'라는 의미에서 '문화들의 소통의 영역'이 현상하기 매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연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다문화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양립하기에는 시대착오적 요소들이 녹아들어가 있다.

헤겔은 근대 "국가의 이념"을 "개별 국가" 속에서 보고 있다. 그는 이 개별 국가가 "그 자체로 자신과 관계하는 구조물(Organismus)인 헌법 혹은 [한 국가의] 내적 국법(Staatsrecht)"(Hegel 1967, § 259)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과 국가를 동일시했다. 헤겔은 이러한 서술적 이해를 넘어 헌법의 개념을 규범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헌법은 "국가가 자신의 작용(Wirksamkeit)을 [...] 자신 속에서 구분하고 규정하는 한에 있어 이성적"(Hegel 1967, § 272)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마지막 의문이 결론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시대에 상응하는 '국가의 작용'이 국가(헌법)에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과연 '이성적'인가?<sup>14)</sup>

14) 이 마지막 의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헌법의 의미를 '사회전체가 각각의 경우에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는 데서 찾고 있다는 방식에 상응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 연구의 1장 문제 제기 부분을 참조할 것.

## 참고문헌

- 3·1 독립선언서 = <http://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3-1-31dogribsununsu.htm>
- 4.19 공식문 = [http://www.419revolution.org/morgue/morgue\\_02.asp](http://www.419revolution.org/morgue/morgue_02.asp)
- 김선택, 2010. “다문화사회와 헌법”. 헌법학연구 16(2), 1-41.
- 김성호 · 최명호, 2008. “1948년 건국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우리들 大韓國民의 정체성과 정당성”. 한국정치학회보 42(4), 87-112.
-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 [http://www.ccourt.go.kr/home/main/download/opencase/document/03\\_edit.jsp](http://www.ccourt.go.kr/home/main/download/opencase/document/03_edit.jsp)
- 대한민국헌법 = <http://www.law.go.kr/lsEfnfoP.do?lsiSeq=61603#0000>
- 서보건, 204. “다문화사회와 헌법상 국민개념의 변용”. 유럽헌법연구 13, 293-320.
- 성낙인, 2011. “헌법과 국가정체성”. 法學 (서울대학교) 52(1), 101-127.
- 성선제, 2012.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기초”. 홍익법학(홍익대학교) 13(4), 119-144.
- 양승태, 2011. “국가정체성 문제와 한국의 정당: 거대 담론의 출발을 위한 정치철학적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45(4), 5-27.
- 오승호, 2011. “다문화 사회의 헌법교육 모색: 헌법 애국주의 관점에서”. 법교육연구 6(1), 77-111.
- 이덕연, 2013.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저스티스 136, 27-63.
- 이한태, 2013. “헌법상 민족 개념에 대한 소고”. 인문사회과학연구(부경대) 14(2), 415-443.
- 전광석, 141.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헌법학연구 16(2), 105-146.
- 최경옥, 2010. “韓國에 있어서의 多文化主義에 대한 憲法的 視覺”. 동아법학 48, 1-29.
- 최윤철, 2012.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1집 2호, 2012, 1-31, 17.
- 최치원, 2013. “간문화적 성찰과 시민교육 그리고 정체성 문제 고찰” 인문학연구(강원대) 36, 375-407.
- Aristotle, 1972[1962]. The Politics. T. A. Sinclair (Trans.). Baltimore: Penguin Books.
- Choi, Chiwon, 2002. Kulturkonzeptionen deutscher Gesellschaftswissenschaftler und Historiker seit dem späten 19. Jahrhundert. Aachen: Shaker Verlag.
- Das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http://www.bundestag.de/bundestag/aufgaben/rechtsgrundlagen/grundgesetz/index.html>
- Die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http://www.documentarchiv.de/>

ddr/verfddr1949.html

- Hegel, Georg W. Friedrich, 1967.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Johannes Hoffmeister hrsg. Hamburg: Felix Meiner, unverän. Nachdr. 1967 der 4. Aufl. v. 1955.
- Nietzsche, Friedrich, 1968[1886]. "Achstes Hauptstück: Völker und Vaterländer." Jenseits von Gut und Böse. Vorspiel einer Philosophie der Zukunft(1886). Giorgio Colli & Mazzino Montinari (Hrsg.), Nietzsche Werke/Kritische Gesamtausgabe, 6. Abteilung(2.Band).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 <http://constitutionus.com/>
-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ri.court.go.kr/eng/ccourt/news/related.html>

# Intercultural Critics of the Constitution and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 A Political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

Chi Won Choi  
(Korea University)

## keywords

Interculturalism, Multiculturalis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Identity, Aristotle & Hegel, Nietzsche

This study, sta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culturalism, is a critic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identity, which are defined in the Constitution. In the middle of the interpretation, there are the questions of We-the-people-Korea-identity and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categories which justify this identity. Through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claim that the things, which have been granted, could be questioned, thus a horizon could be opened give a new meaning to culture. From this, it becomes clear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acks elements which could generate a space for 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sense of 'in-between'. Conversely speaking, it has elements that are too anachronistic to compatible with the 'end' that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aiming at realizing.